

2018. 04. 26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18년 4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

노동정책담당관	박경환	2133-5410
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단체지원팀장	민화영	2133-5419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담당자	홍영철	2133-5420
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권리구제 ‘노동권리보호관’ 50명으로 확대

- 임금체불, 부당해고, 부당징계, 산업재해 등 상담~진정~행정소송 대행
- 1기 40명 → 2기 50명 확대, 공인노무사·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
- 신청자격 확대를 위해 월 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상향
- 2년간 300명 이상 권리구제. 유형별로는 임금체불, 연령대로는 20대와 60대가 가장↑
- 27일(금)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‘2기 위촉식’ 개최, 2년간 심층적 권리구제

-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,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해주는 ‘노동권리보호관’을 확대·운영한다.
- ‘노동권리보호관’은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70만 원 이하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, 부당징계,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.

□ 올해 새롭게 위촉한 2기 ‘노동권리보호관’은 총 50명(공인노무사 35명, 변호사 15명)으로 '16년 4월 위촉한 1기 40명(공인노무사 25명, 변호사 15명)보다 10명이 늘었다. 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했다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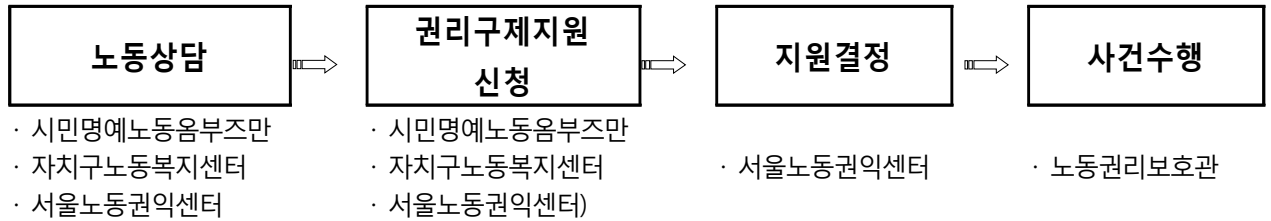
□ 2기 ‘노동권리보호관’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, 위촉식은 27일(금) 오후 2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다.

○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, 공인노무사회, 자치구복지센터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.

□ 아울러,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.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지원대상의 월 평균 임금을 기존 250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지원자격	지원종류	지원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▶ 평균 270만원 이하, 또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체불임금 진정 ▶ 부당해고·부당징계 구제신청 ▶ 산업재해 신청 ▶ 소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법률대리인(공인노무사, 변호사) 선임비용 지원

□ 지원을 받고자하는 노동자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(02-376-0001)로 전화하거나,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(구로, 강서, 관악, 광진, 노원, 서대문, 성동, 성북)를 방문하면 전문가 1차 상담 후 전담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,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준다.



- 지난 2년간 노동권리보호관은 총 304건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했다. 구제지원 유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214건(70.4%)으로 가장 많았다.
- 지원받은 노동자의 연령대는 20대와 60대가 각각 70명이며, 50대(55명), 70대 이상(43명), 30대(40명), 40대(25명) 순으로 경비원과 같은 중고령층 노동과 청년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- 전체 사건 중 종결된 254건의 81.5%인 207건은 현재 합의 및 인정되어 권리를 회복했고, 특히 체불임금진정 종결사건 194건 중 162건(84%)이 합의 및 인정된 상태로 체불임금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.
-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“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요와 체계적이고 빠른 지원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했다”며 “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과 연계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